

서울토지지원리츠 19년 1차 공모 지침서 수정사항

기존	변경
<p>제4조(사업내용) 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의 커뮤니티로 활용되는 부대복리시설(이하 “커뮤니티공간”)을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커뮤니티공간 이외의 상가 등 수익시설(이하 “수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커뮤니티공간과 수익시설의 연면적 합계는 주거전용면적의 30% 미만이어야 한다.</p>	<p>제4조(사업내용) 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의 커뮤니티로 활용되는 부대복리시설(이하 “커뮤니티공간”)을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커뮤니티공간 이외의 상가 등 수익시설(이하 “수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커뮤니티공간과 수익시설의 연면적 합계는 주거전용면적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에 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거부분에 적용시키지 못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을 커뮤니티+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커뮤니티와 수익시설과의 면적비율은 용적율을 완화받기전과 동일해야한다.</p>
<p>제7조(사업신청 등) ⑥ 사업신청 전 탁상감정평가 결과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금액이 50억을 초과하거나 토지주 요구 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자 선정 이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 사업대상지가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츠는 해당 사업대상지의 매입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7조(사업신청 등) ⑥ 사업자 선정 이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이 50억을 초과하거나 토지주의 요구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대상지의 매입을 취소할 수 있다.</p>